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327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엄예미, 조상규

변론 종결2024. 10. 30.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각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2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B는 2019. 11. 4.까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81,796,740원(노원세무서)을 체납하고 있었다.

(2) B는 2019. 11. 4.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분양권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20. 3. 5.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2020. 6. 30. 증여세 결정 통지(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고지세액은 0원이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70,2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 이는 제소기간이고, 위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20, 21,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21. 11. 1.(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산하 구리세무서장이 B 소유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날)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이 2020.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증여세 결정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국세채납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권한을 가지고 있고, 채납자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통상적으로 조세의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채납자의 재산을 조회한다고 주장하였는바(2024. 10. 11.자 준비서면), 원고가 주장하는 B의 조세채무 내역이 아래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8. 8. 15. 이후 여러 차례 B의 재산을 조회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리	제2차납세의무자	2021-08-31	2021-10-27	201712	20171231	법인세	25,700,680
구리	제2차납세의무자	2021-08-31	2021-10-27	201812	20181231	법인세	270,312,870
구리	제2차납세의무자	2021-08-31	2021-10-27	201701	20170725	부가가치세	7,971,330
구리	제2차납세의무자	2021-08-31	2021-10-27	201707	20180125	부가가치세	20,953,120
구리	제2차납세의무자	2021-08-31	2021-10-27	201801	20180725	부가가치세	48,375,180
구리	제2차납세의무자	2021-08-31	2021-10-27	201807	20190125	부가가치세	94,636,980
구리	제2차납세의무자	2021-08-31	2021-10-27	201901	20190725	부가가치세	34,294,190
구리	제2차납세의무자	2022-03-31	2022-05-12	201802	20180228	근로소득세(갑)	36,410,590
구리	제2차납세의무자	2022-03-31	2022-05-12	201902	20190228	근로소득세(갑)	359,616,190
노원	원납세자	2018-07-31	2018-08-15	201501	20151231	종합소득세	21,014,070
노원	원납세자	2018-07-31	2018-08-23	201601	20161231	종합소득세	160,782,670
성동	원납세자	2022-10-15	2022-11-05	201701	20171231	종합소득세	52,701,190
성동	원납세자	2020-12-15	2021-01-14	201801	20181231	종합소득세	7,665,940
성동	원납세자	2022-10-15	2022-11-05	201801	20181231	종합소득세	399,467,180
노원	원납세자	2019-12-31	2020-01-30	201601	20160725	부가가치세	37,245,330
합계	1,577,147,510						

○ 원고가 2023. 1. 16.자로 출력한 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갑 제8호증) 중 "분양권자료" 항목에 2019. 11. 4.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2023. 1. 16. 전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B의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B와 피고는 2017. 12. 27.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소외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아파트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이 2020. 3. 17.에, 성동세무서장이 2021. 2. 2.에, 구리세무서장이 2021. 11. 1.에 각각 압류를 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노원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구리세무서장이 2020. 6. 2.부터 2021. 6. 18.까지 B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권 9개를 압류하였다.

○ 원고는 2023. 1. 16. 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23. 2. 7. 금융기관에 B의 예금채권을 조회하였을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부터 원고에 대한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는 2020. 6. 30.경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차례 B의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중 "소득자료" 항목에 B의 각 금융기관 관련 금융소득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2023. 1. 6. 이전에도 B에 대하여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면서 예금채권 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각 세무서장이 실제로 B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바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옥희

별지